

입주민 vs 택배업체 '평행선' ...분쟁 사태 장기화하나

[다산 신도시 택배대란]

입주민, 표준 약관에 따라 배송품 집 앞까지 배달하는 것이 원칙
택배업체, 표준 약관 강제력이 없어서 다산 신도시는 배달 불가
일부 쇼핑몰, 다산신도시 판매 금지...사회 문제로 불거질 소지도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불거지고 있는 택배 분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택배 업체가

준용하는 표준 약관에 따라 배송품을 집 앞에까지 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배 업체 측은 표준 약관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의 경우 집앞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종론이다. 시태가 장기화될 경우 냉동, 신선식품 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사이트에서는 다산 신도시로의 판매를 중지한다는 입장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다산 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 대란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15일 택배업체에 따르면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은 지난달 단지 내 택배 배달을 하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아이가 차에 치밀 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사고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구성된 대책회의에서는 단지내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 통로에 대한 택배차량 출입 금지를 시행했다. 이에 일부 택배 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물량이 많았던 CI대한통운은 배송을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택배업체가 준용하는 표준약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원칙대로 집까지 배달을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택배업체들은 표준 약관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는데다 택배 기사가 집앞까지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황에서 집앞까지 배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집앞까지 배송을 하려면 택배기사들이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 규모가 작지 않아 시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해당 아파트로 향하는 물건에 한해 택배비를 올려 받는 것도 힘들어 아파트 입주민들과 타 협점장을 찾지 못할 경우 현재와 마찬 가지로 특정 장소에 택배를 배달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택배업체 측과 아파트 입주민 모두 피

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택배업체의 경우 현재 임시 택배보관소처럼 이용하고 있는 임시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배송되는 물건이 파손될 경우 택배회사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부 쇼핑몰에서 이미 다산 신도시 주민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택배 배달이 헛해진 요즘 집에서 택배를 못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입주민대표 자회의 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시태가 장기화될 경우 택배업체도 입주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근본적 해결책은?... “현 주차장법 개정해야”

다산 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 시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는 주차장 높이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상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주차장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1979년 주차장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됐으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승용차 및 SUV 차량 등이 지하주차장 진입에 용의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

택배차량의 높이가 대부분 2.5~3m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택배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높이라고 볼 수 있다.

지하주차장은 건출물이 만들어진 당시부터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됐으며 지상주차장은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다보니 택배기사와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1979년 제정된 주차장법, 높이 2.3m로 규정 돼 택배차량 진입 불가

택배 보관소와 실버택배원 고용 등 통해 주민·택배기사 갈등 없애야

있는 셈이다.

일단 택배업체들은 다산 신도시 입주민대표회의 등과 택배대란을 막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법은 2~3기지로 요약된다.

먼저 택배 차량 이동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한 뒤 예전처럼 지상 주차장을 택배 차량들이 이용할 수

만드는 방안이다. 지정된 장소에 택배를 배달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택배를 가져가게 하는 식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입구에 택배 보관소를 만들고 실버택배원을 아파트 측에서 고용을 할 수도 있다.

택배기사가 택배 보관소에 많은 양의 택배를 운송한 뒤 개별 가정에는 시너어 배송원들이 배송하도록 해 주민과 택배기사 갈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일부를 택배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 단체장이 부대조건으로 지하주차장 및 진출입로 증고를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시태는 40여년간 개정되지 않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동주택 인허가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하주차장 및 진출입로 증고를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업체는 이번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진출입로 설계에 이를 반영하고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